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제정 : 2015. 09. 11.
 개정 : 2019. 01. 11.
 개정 : 2019. 02. 01.
 개정 : 2019. 03. 08.
 개정 : 2019. 09. 06.
 개정 : 2020. 01. 10.
 개정 : 2021. 01. 08.
 개정 : 2022. 02. 11.

담당 : 교학팀(02-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과 적용)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조의2(교육과정위원회)
제4조(위원회 기능)	제5조(교육과정)	제5조의2(교육과정 운영부서)	제6조(편성원칙)
제7조(편성절차)	제8조(교육과정 개편안 제출)	제9조(교과목 변경)	제10조(학수번호 표기)
제11조(교육과정 적용)	제12조(교육과정 이수)	제13조(교과목의 대체)	제14조(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과 적용) ① 이 규정은 학칙 제37조에 따라 대학의 교육목적에 맞게 인재상과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성"이라 함은 영역의 구분, 과목의 신설 및 폐지, 표준이수형태, 이수규정, 이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함
2. "운영"이라 함은 교과목 개설, 수업시간 편성, 담당교수 결정, 분반, 합반, 폐강 등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것을 말함

3. "변경"이라 함은 교과목 영역, 국문·영문명칭, 학점구조, 이수학년·학기, 교과목개요, 교과목 이수규정 등 제반 변경사항을 말함
4. "동일지정 교과목"이라 함은 교과목명칭 변경시 변경전 교과목과 변경후 교과목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교과목의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변경후 교과목의 이수는 변경전 교과목의 재이수가 됨
5. "대체지정 교과목"이라 함은 교과목이 폐지되어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지정하는 교과목을 말함

제2장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제3조(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우리 대학 교육과정이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9.09.06)

1.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또는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 위원 구성 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역할은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개편에 앞서 대학의 설립목적과 신앙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이 본교가 추구하는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3조의2(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 개편의 실제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19.09.06)

1.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교육과정운영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1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
2. 교육과정위원회에는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09.06)

1.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수립
2. 편성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상시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제4조(위원회 기능) (삭제19.09.06.)

제3장 교육과정 편성

제5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일립교육과정 : 성서를 기반한 중핵교양교육과 신앙교육 및 훈련으로 밀알정신과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복음전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정21.01.08.)
2. 기초교양교육과정 :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학문기초능력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정

3. 전공교육과정 : 각 학과의 전공능력과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
4. 비교과교육과정 : 일립교육·기초교양교육·전공교육을 보완하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 ② 일립교육과정과 기초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18.02.09) (개정19.03.08.)(개정21.01.08.)
 - ③ 교과목 이수구분은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선택), 전공(기초, 필수, 선택), 교직, 융합필수, 일반선택으로 한다.(개정20.01.10.)

제5조의2(교육과정 운영부서) ① 교육과정의 운영부서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신설18.02.09)

1. 일립교육과정 : 일립교육부(교목실, 성서적세계관교육과, 신앙훈련과, 밀알사회봉사단) - 일립교육위원회(개정21.01.08.)
2. 기초교양교육과정 : 기초교육원 - 기초교육위원회(개정19.02.01.) (개정19.03.08.)
3. 전공교육과정 :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
4. 비교과교육과정 : 교수학습센터 - 비교과교육위원회 (개정18.10.05.)(개정21.01.08.)

제6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 개편주기는 4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사회의 변화요구에 대응하고 학문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질 관리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시 개편할 수 있다.(개정19.09.06)

- ② 개편된 교육과정은 익년 1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일립교육과정과 기초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편성한다.(개정19.03.08)
- ④ 전공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된 각 학과별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전공능력을 기반으로 편성한다.(개정19.09.06)
- ⑤ 비교과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을 보완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과교육위원회의 편성원칙을 기반으로 편성한다.(개정19.09.06)

제7조(편성절차) ① 4년 주기의 정기적 교육과정 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교학처에서 교육과정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정체성, 인재상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시한다.
 3.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 평가·분석결과와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을 수립한다
 4. 각 교육과정 운영부서는 교육과정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상정된 교육과정 편성안에 대한 운영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6.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 편성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교육과정 운영부서에서 운영한다.
- ② 4년 주기의 정기적 교육과정 개편 외에 교과목 변경 등 일상적인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신설 : 교과목 개요(별지서식4), 관련 회의의사록(개정18.02.09)
 2. 변경 : 교과목 개요(별지서식4), 관련 회의의사록(개정18.02.09)
 3. 폐지 : 교과목 폐지 신청서(별지서식6), 관련 회의의사록(개정18.02.09)

제8조(교육과정 개편안 제출) 교육과정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교육과정표 (별지서식1)
2. 교육목표와 역량 및 역량-교과목 연계표 (별지서식2)(개정18.10.05.)
3. 신·구 교육과정 교과목 변동표 (별지서식3)
4. 교과목 개요 (별지서식4)
5. 다전공 이수지정 교과목표 (별지서식5)

제9조(교과목 변경) (삭제 19.09.06)

제4장 교육과정 운영

제10조(학수번호 표기) ① 모든 교과목에는 학수번호를 표시하며, 학수번호 앞부분의 알파벳(2개)은 다음과 같이 주관학과를 가리킨다.

1. 전공교과목 - 학과 TH, 사회복지학과 SW, 영유아보육학과 CC,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IC, 간호학과 NU
2. 일립 및 교양교과목 - GE
3. 교직교과목 - TE

② 학수번호 뒷부분의 숫자(3개)는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제11조(교육과정 적용) ①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 ③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제12조(교육과정 이수) ① 교육과정 편성시 교육과정 구조(표1)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개정 18.02.09)

② 졸업이수학점은 다음의 <표1>과 같다.(개정18.11.30.)(개정20.01.10.)

③ 교육과정별 최소학점은 다음의 <표1>과 같으며, 간호학의 경우는 간호인증평가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18.02.09.)(개정18.11.30.)(개정22.02.11.)

<표1> 교육과정 구조 (개정18.11.30.)(개정19.01.11)(개정19.02.01.)(개정22.02.11.)

구분		일립교육			1전공			자유 선택	졸업이수 학점
		중핵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인문 사회 계열	성서학과	8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53학점 이상			45학점 이내	130학점 이상
	사회복지 학과	13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5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	130학점 이상
	영유아보육 학과	13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5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	130학점 이상
공학 계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	13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5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	130학점 이상

구분		일립교육			1전공			자유 선택	졸업이수 학점
		중핵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자연 계열	간호학과	13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	138학점 이상
구분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모듈		
다전공	제1전공	51학점		42학점	42학점		42학점		
	제2전공	51학점		42학점	21학점		15학점		

제13조(교과목의 대체) ①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해당 교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과목인정서(별지서식7)를 작성하여 대체과목 담당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제14조(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과목차원, 학과차원, 대학차원의 교육과정 평가체계를 둔다.

② 매학기 수업종료 후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별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8.02.09)

③ 매년 수업종료 후 각 교육과정 운영부서는 CQI보고서 및 교육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신설 18.02.09)

1. 교육개요 : 학과 교육목표와 인재상 및 역량, 학생현황, 교육과정 및 운영
2. 교육성과 : 수업평가, 교육만족도, 학사경고자 수, 역량달성도/역량향상도, 취업률
3. 교육개선 제안 : 교육과정, 강의개선, 수업관리, 학생지도

④ 매년 교학처는 제출된 CQI보고서 및 교육성과보고서를 취합하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학 차원의 교육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18.02.09)(개정19.09.0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12조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1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 교육과정표

교육부서명 :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 학기	강의 종류
				이론	실습	설계		
필수학점 소계								
선택학점 소계								
전체학점 합계								

※ 강의종류는 1. 이론강의 2. 통합강의 3. 실습강의로 구분하여 숫자로 기재한다.

(별지서식2) **교육목표와 역량 및 역량-교과목 연계표**

교육부서명 :

1. 학과 교육목표 및 학교 교육목표와의 연계성(개정18.10.05.)

--

2. 역량

역량	역량 설명
1.	
2.	

3. 역량-교과목 연계표

역량	해당 교과목명		
1.			
2.			

(별지서식3) 신 · 구 교육과정 교과목 변동표

교육부서명 :

현행 교육과정			개선 교육과정			개정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폐지, 신설, 변경 (동일과목)변경 (유사과목)

(별지서식4) **교과목 개요**

교육부서명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국문	영문		이론	실습	설계
교과목 설명 (국문)						
교과목 설명 (영문)						
역량						
선수권장 (필수)과목	<p>이 과목을 듣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또는 선수를 권장하는 교과목을 제시한다.</p> <p>가. (교과목 명) (선수필수 또는 선수권장) 나. (교과목 명) (선수필수 또는 선수권장)</p>					
이수 후 권장과목	<p>이 과목을 이수한 후에 권장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제시한다</p> <p>가. 교과목 명 나. 교과목 명</p>					

(별지서식5)(개정19.01.11) **다전공 이수지정 교과목표**

교육부서명 :

전공구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중전공				
	이수학점 계			
부전공				
	이수학점 계			
복수전공				
	이수학점 계			

※ 이수구분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표기하되, 전공필수는 과목으로 나열하고, 전공선택은 요구학점만 기재

(별지서식6)(개정18.02.09)

교과목 폐지 신청서

교육부서명 :

학수번호	교과목명	폐지사유

위와 같이 교과목을 폐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장 : (인)

한국성서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별지서식7)(개정18.02.09)

대체과목인정서

학 번		성 명	
학과(전공)		학 년	

본 교과목명	대체과목명	대체과목 담당교수 확인

위와 같이 대체과목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장 : (인)

한국성서대학교 교학처장 귀하